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아시410-		(전화번호)	전 천 구 정 조 전 천 사 항
처리기간			마 수 국 장	
시행일자			P 1976.5.13	
보존년한			법무 담당관 법무 심사필	
보 조 기 관	마수 시설국장	<i>국장</i>	법	법무 담당관 법무 심사필
	마수 계장	<i>국장</i>	시설 1 계장	<i>국장</i>
기안책임자	유 낙준	77.5.	조	
경 우 수 신 창 조	기안참조	발 신	통 제	검열 1977.5.13 <i>국장</i>
제 목	도시계획사업(마수도) 완료			
제1안	내부결재 [국장] 106호			
제록 등 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43호 (75.9.11)로 시행이 가학나 있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기 아래와 같이 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자 하며,				
2. 마수 419-899 (76.12.21)로 건설부에 험의 요청한 바 건설부의 고시 415-25140 (76.12.23)의 거본 사업은 비행거점 의 시행자(오정숙)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능상 전혀 아자가 없는 마수도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이설로 인한 충돌 폐지 되는 공공 시설을 공사비 벌써내에서 시행자에게 투상 양여는 불가피 하는 회신인바,				
3. 사업완료 공고후 본사업 실시로 인해 충돌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을 충돌 폐지 시키고 사업 시행자에게 구유 재 산법에 의거 취득보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0201-1-8A (자)
1996.11.10 승인

1399

190mm×230mm 인쇄 용지 2쪽, 049/04
세계소년기 출판(92-0436)

가.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일시

충무로 5가 19-13 구가 이설공사 75.9.11-1976.

10.15)

나. 사업시행자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0-5 오정숙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구 충무로 5가 19-13

마. 사업의 규모

높이 (폭: 3M 높이 2.5M 연장 48M)

마. 준공도면 (별첨)

바. 귀속재산 및 양도 재산 조서

(1) 서울시에 귀속 시설물 :

높이 (폭 3M 높이 2.5M 연장 48M)

(2)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 : 없음

사. 본 사업시행으로 등록 폐지되는 재산(토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종구 충무로 5가 19-13	도로	33 4평	국유

제2안

수신 충무로 저장관(서울시: 공보 실장)

발신 시장(과장)

제목 도시계획사업(마포도 이설) 안보 공고

1. 도시계획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공고 제 호를 승부 약오니 관보(시보)에 계획하여 주식기

나합니다.

승인한 날짜 1976. 11. 12. 1/3 호

심사자 명재화장 별증 달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2매 (1매)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호

도시계획사업(마포도 이설) 안보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43호 (75.9.11)로 시행. 이각안.박 있는

1400

"도시계획사업(아수도이설)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85조 제1항 및 품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23호(75.4.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사업완료 공고후 본 사업 실시로 인해 송도가 폐지되는 기존 궁금 시설은 송도 폐지 시기고 사업시행자는 ~~국·부·~~ 재산법에 의거 재산 관리청과 면의하여 송도 폐지되는 재산(토지)을 취득할수 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아수 시설과 맑 중구청 도록 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아예"

제1안의 "아예" 이기

1977. 5.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성북구 종암동 10-5 오점숙

제목: 도시계획사업(아수도이설) 준공 통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43호(75.9.11)로 귀하에게 시행
여가만바 있는 풍부로 5가 지내(아수도이설) 도시계획사업을
별첨과같이 완료 공고하였기 통보합니다.

2. 본 '아수도이설'은 그 기능상 법 지정 없으나
귀하도 지역 풍광 가치 증진을 위하여 아수도를 이설한 공사이므로
귀하에게 폐구부지를 공사비 범위내 두상 양어는 면행관개
법상 불가한 사항이용기 이점 양지 아시고, 시정 발전에 계속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사업 실시로 인해 송도가 폐지되는 재산(토지)는
구유 재산법에 의거 재산관리청과 면의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제4안"

수신: 종구청장

02)1-1-43A (2-2)
1972. 12. 29. 승인

4월 10주 번지

190mm X 288mm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찰조 토록과장

제목 도시계획 사업 준공에 따른 협조 지시

1. 아수 410-519 (75.9.11)에 관련임.
 2. 이 대로로 시행 미가되어 시행 완료된 종구 충루로
5가 19-13일 도시계획사업(아수도이설)을 완료 공고하고
별첨과 같이 이를 통보 아니.
 3. 본 사업 시행으로 시설이 대체되어 충도 폐지되는
기존 궁공시설을 충도 폐지 시켜 시행자(오정숙)가 국유재산법
에 의거 처벌할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도시계획사업(아수도이설)완료 공고 1부. 끝.